의안번호

제 702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09. 6. 25(목) · 중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9. 7. 2(목)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09. 7. 22(수)

2. 제정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O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안 제3조, 제4조)
- O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O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O 자전거보관대·정비소·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O 구민자전거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5조)
-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울산광역 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안 제17조~제22 조)

- 본 조례안은 구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주차요금, 자전거 보관대, 정비소, 대여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구민 참여를 위한 시범기관 지정·운영, 자전거 이용의 날 운영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같은법 제12조의3제2항에 의한 단지조 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 분의 5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자와, 주택법 제21조에 의한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O 주차장의 관리는 설치자가 하고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고 있음
- O 구청장이 자전거 보관대, 정비소, 대여소 등을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에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에서 동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시설의 이용요금과 운영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은 울산광역시 및 남구를 비롯하여 전 국 80여개 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 절 약 및 환경적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 리 구에도 자전거이용 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통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 련 법 령】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1 전체 시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u>「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u>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9.1.21, 2006.7.19>

[현에제11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u>동법 제12조의 3제2항의</u>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u>대통령령이 정하는</u> 일정비율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u>대통령령이 정하는</u>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1, 2006.7.19>

-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u>「주차장법」 제19조</u>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u>「주택법」 제21조</u>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3.5.29, 2006.7.19>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타법개정]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함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를 말한다.

②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2. 자전거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 3.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등에 관한 사항

주 차 장 법

제4장 노외주차장

[편]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개정 1999.2.8>) ①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설치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2003.12.31, 2008.2.29>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지정규모, 지정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7.13>

- ③ 삭제 <1999.2.8>
- ④ 삭제 <1999.2.8>
- ⑤ 삭제 <1999.2.8>
- 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

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u>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u>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1.7>
[전문개정 1990.4.7]

[현폐제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부설주차장

[19]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2.4>

-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u>다.
-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u>대통령령이 정하는</u>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u>대통령령이 정하는</u>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u>대통령령이 정하는</u>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 ⑧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승계한다. <신설 2000.1.28>
- ⑨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1.28>
- 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2008.2.29, 2009.1.7>
- ⑪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중 <u>대</u>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 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 ⑩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전문개정 1990.4.7]

주 택 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주택의 배치, 세대 간의 경계벽, 구조내력(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 2.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 3.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 4.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5. 대지조성기준
-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